

인천지방법원 2021. 2. 18 선고 2020가단22581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1. 2. 18.

주 문

1. 피고 B는 11,538,462원을, 피고 C, D, E, F는 각 7,692,308원을 각 원고로부터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6. 2. 24. 접수 제23770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1)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각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문주희

별지

1) 청구취지 중 피고 B 부분의 11,538,642원은 11,538,462원의 오기로 보인다.